문화체육관광부

# 문화체육관광부

수신 전국대학(교)총장 귀하
(경유)

제목 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 요청

1. 귀 대학(교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 부는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여 왔으나, 아직도 **매년 신학기에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에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**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

3. 2018년도 가을 신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우리 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**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**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귀 대학 및 주변 복사업체에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| | |
|---|---|---|
| | < 협 조 사 항 > | |

○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홍보·교육 강화(각 학과장 등 전 교직원 대상 공문 공람)

-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(복사)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* 행위임을 안내

* **저작재산적 권리**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**침해**할 경우 **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**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(저작권법 제136조)

- 교직원을 통한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불법복사 지도강화
-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

○ **학교 자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홍보**

- 우리 부 협조 문서를 학교 내 게시판, 대학신문, 홈페이지 등에 게재

○ **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에 대한 불법복제 근절 안내**

-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
-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 '**북스캔**' 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
- 대학 교내 복사업소에 대해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유통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자체지도 점검 강화
- 교내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의 불법복사 방지 홍보캠페인 진행시 협조

끝.

**문화체육관광부장관**

| 주무관 | 기안08/29 전진덕 | 행정사무관 | 대결08/29 이동혁 | 저작권보호과 장 | 노정동 |
|---|---|---|---|---|---|

협조자

시행 저작권보호과-3964 (2018-08-29) 접수 2018-4432 (2018-08-29)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203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/ http://www.mcst.go.kr

전화번호 044-203-2490 팩스번호 044-203-3466 / jjdsky99@korea.kr / 공개